

법제처, 2023년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입법영향분석 개선과제 확정 및 ‘만 나이 통일’ 후속 입법조치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3일, 서울 레스케이프 호텔에서 ‘2023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제처에 설치된 위원회(「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실시한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가 안전으로 상정되어 그에 관한 세부 내용을 논의·확정하였다.

* 현행 법령이 국민·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제도

분석 대상은 총 3개로 ‘어린이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방식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장애인등록’에 대해서는 장애정도 심사에 대한 이의 신청 근거를 고시에서 법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과제를, ‘위생용품 관리’에 대해서는 위생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영업자 위생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의 과제를 각각 선정하였다.

법제처는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제도개선 과제를 소관 부처에 통지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부처에서 자율정비를 추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입법영향분석 대상으로 복지 바우처 제도(「사회서비스이용권법」), 민간자격증 제도(「자격기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부동산거래신고법」) 3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과제는 연구용역 및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현행 만 나이 예외규정에 대한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추진 현황을 각각 점검하였다.

법제처는 추가적인 부처협의를 거쳐 만 나이 예외 규정 정비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만 나이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홍보도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제1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1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2021년 12월 3일 출범 이후 2년 동안 전문가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기능해왔다. 특히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민 중심의 행정법제 혁신에 기여해 왔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오는 12월 3일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을 위한 역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 중심의 행정 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더 큰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 ※ 붙임 : 1. 2023년 제2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계획
2. 국가행정법제위원회 개요
3. 2023년 입법영향분석 제도개선 과제

담당 부서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	책임자	정비지원팀장	이경미	(044-200-6739)
		담당자	사무관	염철승	(044-200-6743)
				이형훈	(044-200-6744)
				정유진	(044-200-6736)

□ 개 요

- (일시) 2023. 11. 23.(목) 13:40 ~ 15:40
- (장소) 레스케이프 호텔(서울시 중구 소재)
- (참석자) 법제처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민간위원장, 민간위원, 정부위원 등 30여 명
- (안건) 총 4건

- ① 2023년 운영위·분과위 개최 현황
 - ② 만 나이 예외 규정 정비 현황
 - ③ 2023년도 입법영향분석 결과
 - ④ 2024년도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정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3:40 ~ 13:45	5'	■ 개회 및 국민의례	
13:45 ~ 13:50	5'	■ 법제처장 인사말씀	
13:50 ~ 13:55	5'	■ 민간위원장 인사말씀	
13:55 ~ 14:00	5'	■ 기념촬영	전체 참석위원
14:00 ~ 15:30	90'	■ 안건 상정 및 토의	주재: 법제처장
15:30 ~ 15:35	5'	■ 마무리 말씀	민간위원장
15:35 ~ 15:40	5'	■ 폐회	

붙임 2

국가행정법제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행정기본법」(제39조), 「행정기본법 시행령」(제14조~제16조) 및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법제처 예규)
- (소속) 법제처 소속 자문위원회
- (기능)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 응답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1. 법령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의 도입·개선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실태 조사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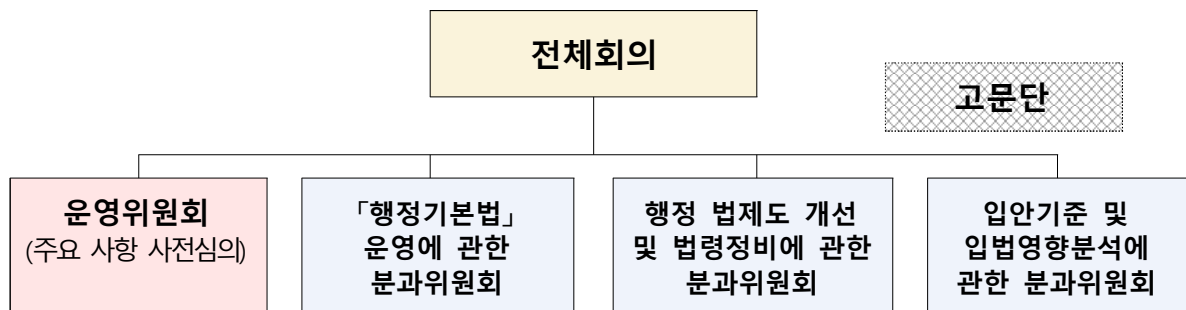
○ (구성) 총 38명

- 위원장 : 법제처장, 민간위원장(국무총리 위촉)
- 위원 : 정부위원(5명), 민간위원(31명, 국무총리 위촉)

○ (운영)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와, 분야별 심층 논의를 위한 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분 운영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세부 구성



1. 어린이 안전관리 제도 [어린이안전법,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선과제
가. (어린이안전법 / 법률 체계) 어린이 안전 총괄·조정 기반 강화 필요 - 종합계획 수립 외에는 사고 등 데이터 수집체계가 없고 종합적·체계적인 제도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이 미비하여 기본법·일반법 기능 부족 ⇒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소관 기관 간 총괄·조정 기능 및 안전사고 데이터 수집 (사고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나. (어린이안전법 / 안전관리방안) 법령에 위험성 평가 방식 구체화 필요 - 법령에서는 법적 근거 및 평가 대상, 평가 참여자 등에 관한 사항만을 언급할 뿐 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은 마련되지 않음. ⇒ 명확성 제고를 위해 <u>위험성 평가 방식이나 기준을 법령에 구체화</u>할 필요
다. (어린이안전법 / 안전교육) 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율 제고 위한 규정 보완 필요 - 의무교육임에도 관리주체가 자체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고, 종사자가 이수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놀이시설법 등 다른 법에 따른 교육과 중복 ⇒ 안전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제도적 장치(홍보, 미이수 과태료 등)가 필요하며, 실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교육 통합이나 내용을 전문화할 필요
라. (놀이시설법/ 응급조치 및 보상) 사고 대응 체계 및 보상 강화 필요 - 응급조치 의무가 일부 시설에 한정되고, 의무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다른 입법례보다 낮음. ⇒ 적절한 사고 대응·보상을 위해 응급조치의무 시설범위 및 보상한도 조정

2. 장애인 등록 제도(장애인복지법)

개선과제
가. 장애정도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근거를 법령으로 마련 필요(고시→법령) - 고시인 장애정도심사규정에 장애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행정쟁송 제기기간 특례를 두고 있음. ⇒ 처분성, 장애정도 심사 중요성을 고려, 이의신청 근거는 법령으로 상향 정비 ※ 쟁송제기기간 특례(이의신청 결과 통지일 90일)의 경우에는 법률로 상향하거나 삭제
나. 장애인 복지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합리화 - 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장애 등록 및 지원에 대한 수요자 개선 의견 有 ⇒ 수요자 의견을 고려, 장애인 맞춤형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개선하고, 등록 제도(예외 인정 등) 또는 서비스 지원 대상 선정 방식 등 개선 검토

3. 위생용품 관리 제도(위생용품관리법)

개선과제
가. 위생용품 관리를 위한 총괄·조정 기능 강화 필요 - 규범분석 결과 주요 사항 심의 등 총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다소 미흡 ⇒ 위생용품 관리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생용품의 종합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도입 검토
나. 위생교육 내실화 필요 - 영업자 위생교육 효과성에 대해 매년 같은 내용이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 있음. ⇒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위생교육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보완하고, 위생교육 이수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추진하여 운영의 효과성 제고 필요